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신청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본 신청서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서

한국카카오은행 앞

20 년 월 일

본인은 아래와 같이 향후 채무를 일부변제 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합니다.

□ 변경신청 대상 계좌

구분	계좌번호	대출잔액	기한의 이익 상실일
변경 신청 대상			

□ 변경 방식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변경 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용 → 이자 → 원금	비용 → 원금 → 이자
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용 → 원금 → 이자	비용 → 이자 → 원금

□ 확인사항

[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]

- ◆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, 협약대출 등 외부기관의 협약에 따라 취급된 대출
- ◆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
- ◆특수채권

[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시 유의사항]

- ◆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연체된 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·이자·지연배상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해소하면 기한의 이익이 그때부터 부활할 수 있습니다.
- ◆비용→이자→원금 순서로 상환하는 경우,
 - 연체된 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·이자·지연배상금 등을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,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에 따라 상환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.
 -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변경하여 상환을 원하는 경우, 대면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◆비용→원금→이자 순서로 상환하는 경우,
 -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함으로써 원금 일부를 우선 변제하더라도 **잔여 원금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**됩니다.
 - 연체된 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·이자·지연배상금 등을 전액 상환 불가능한 경우,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에 따라 상환하여 원금 일부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연체이자 부과되는 대출원금 잔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는 원금을 우선 변제함으로써 향후 부과되는 연체이자

변제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이미 부과된 연체이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.

-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하여 상환을 원할 경우, '비용→원금→이자' 순으로 채무변제총당순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은행 대면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된 분할상환금·분할상환원리금·이자·지연배상금 등을 신청 당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이전에 비용, 원금, 이자 순으로 채무변제총당순서를 변경한 이력이 있을 경우, '비용→이자→원금'순으로 다시 채무변제총당순서를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용, 원금, 이자 순으로 채무변제총당순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◆채무변제총당순서를 변경하여 상환할 경우, 고객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를 부여(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)받아 상환하여야 합니다.

[기타 확인사항]

- ◆채무변제총당순서 변경 이후에도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대출원금,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'연체정보등'이 등록되며 이에 따른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◆채무변제총당순서 변경 이후에도 담보권 실행, 강제집행,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절차는 기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◆채무변제총당순서를 변경한 이후에는 모바일앱을 통한 원리금 납입, 이자 납입, 중도상환 등 대출금 수납을 위한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며,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만 가능합니다.
- ◆채무변제총당순서 변경 신청의 취소는 불가능하며, 변경 방식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만 신청 전의 채무변제총당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, 본 신청서 사본 1부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변제총당순서 변경을 신청함.

본인(채무자)

(인)